

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 사업 공고

『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 사업』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1일

사 천 시

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 사업
- 사업기간: 2024. 4. ~ 12.
- 사업비: 금18,000천원(도비 9,000천원 / 시비 9,000천원)
- 사업량: 태양광(일반) 기준 45kW (에너지원에 따라 상이함)
- ※ 총사업비: 62,000천원(국 31,000, 도 9,000, 시 9,000, 자부담 13,000)

2. 지원내용

- 에너지원별 지원단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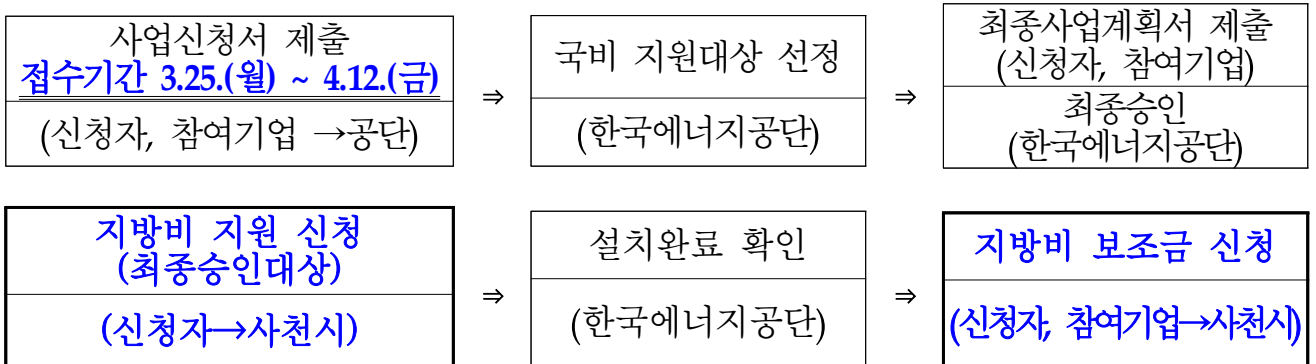
구 분			보조금 지원내역				지원범위
			계	국비	지방비		
도비	시비						
태양광 (천원/kw)	일반	일반모듈	1,161	741	210	210	개소당 20kW 이하
		저탄소모듈	1,347	867	240	240	
	축사	일반모듈	1,309	849	230	230	
		저탄소모듈	1,539	999	270	270	
태양열 (천원/m ²)	10.0초과	1,001	701	150	150	개소당 20m ² 이하	
	7.5초과~10.0이하	911	631	140	140		
통합모니터링 (천원/개소)	태양광	250	250				
	태양열	400	400				

※ 국비는 공단에서 직접 지원(한국에너지공단 → 참여기업)

3. 지방보조금 지원대상

-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『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』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·시설물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사업 최종승인을 받고, 사천시 소재 건물·시설물 소유자이면서, 주민등록 주소지를 사천시에 둔 사람
- 해당 건물 자체소비에 한해 지원하며, 타 지원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,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

4. 사업절차



※ 국비는 국가 직접 지원(한국에너지공단 → 참여기업)

5. 건물지원사업 신청

- 신청인은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하고, 참여기업은 사업적합성 등 검토 후 사업신청서 제출
- 신청기간: '24. 3. 25.(월) ~ 4. 12.(금) (매일 10:00~17:00, 토일공휴일 제외)
- 신청처: 신재생에너지센터(홈페이지 <https://www.knrec.or.kr>)

※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-247호 참조

6.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방법

- 선정기준: 한국에너지공단 최종승인일 우선순
- 지방보조금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정 후 별도 알림

※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- 신청기간: 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후로부터 14일간
- 신청방법: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
- 접수처: 사천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(☎055-831-3066)

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○ 접수서류

- 지원(교부)신청서, 에너지공단 사업최종승인서, 건축물등기부등본, 참여기업사업자등록증, 설치예정장소현장사진, 신청인 주민등록등본, 표준설치계약서, 사업계획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, 청렴이행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신청서 첨부서류 일체

7. 지방보조금 지급신청 방법

- 지급기준: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후 설치완료 확인된 신청자
- 신청기한: 2024. 12. 10.까지
- 신청방법: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
- 접수처: 사천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(☎055-831-3066)

[주소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]

○ 접수서류

- 지급신청서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설치완료확인서,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, 하자보증서 사본, 설치현장 사진(설치 전 후), 실적 및 정산보고서, 지출증빙서류(세금계산서 등)

8. 기타사항

- 신청인 및 참여기업은 ‘산업통상자원부 공고문(제2024-247호)’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, 유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, 상호 분쟁 등은 귀책 사유이므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
- 저탄소 모듈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모듈 인증서를 첨부(탄소배출량: 670kg·CO₂-eq/kW 이하)
- 설치기간은 사업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(90일)이내 사업을 완료 하여야 하며, 보조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 제출시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설치 완료 후 신청자에게 지급함.
- 설치 가능 용량은 20kW 이하로,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음.
- 참여기업 선정에서부터 설치까지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,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사천시는 책임이 없음.
-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
- 건물지원사업 전반(신청, 설치, 국고보조금 등)은 한국에너지공단 (1855-3020)에, 지방보조금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에 문의
 - ※ 자세한 사업내용은 『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사업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-247호(별첨)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신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사업 보조금 지원(교부)신청서 1부.
2. 신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 보조금 지급신청서(사업완료 후) 1부.
3. (산자부) 2023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공고문 1부.
4. 참여기업 대상 리스트 1부. 끝.

신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 사업 지방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벌칙 규정(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)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)
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, 관련자료 미 보관,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98조)

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2024. . .

보조사업자(신청인)

성 명

(서명 또는 인)

설치주소

사천시장 귀하

